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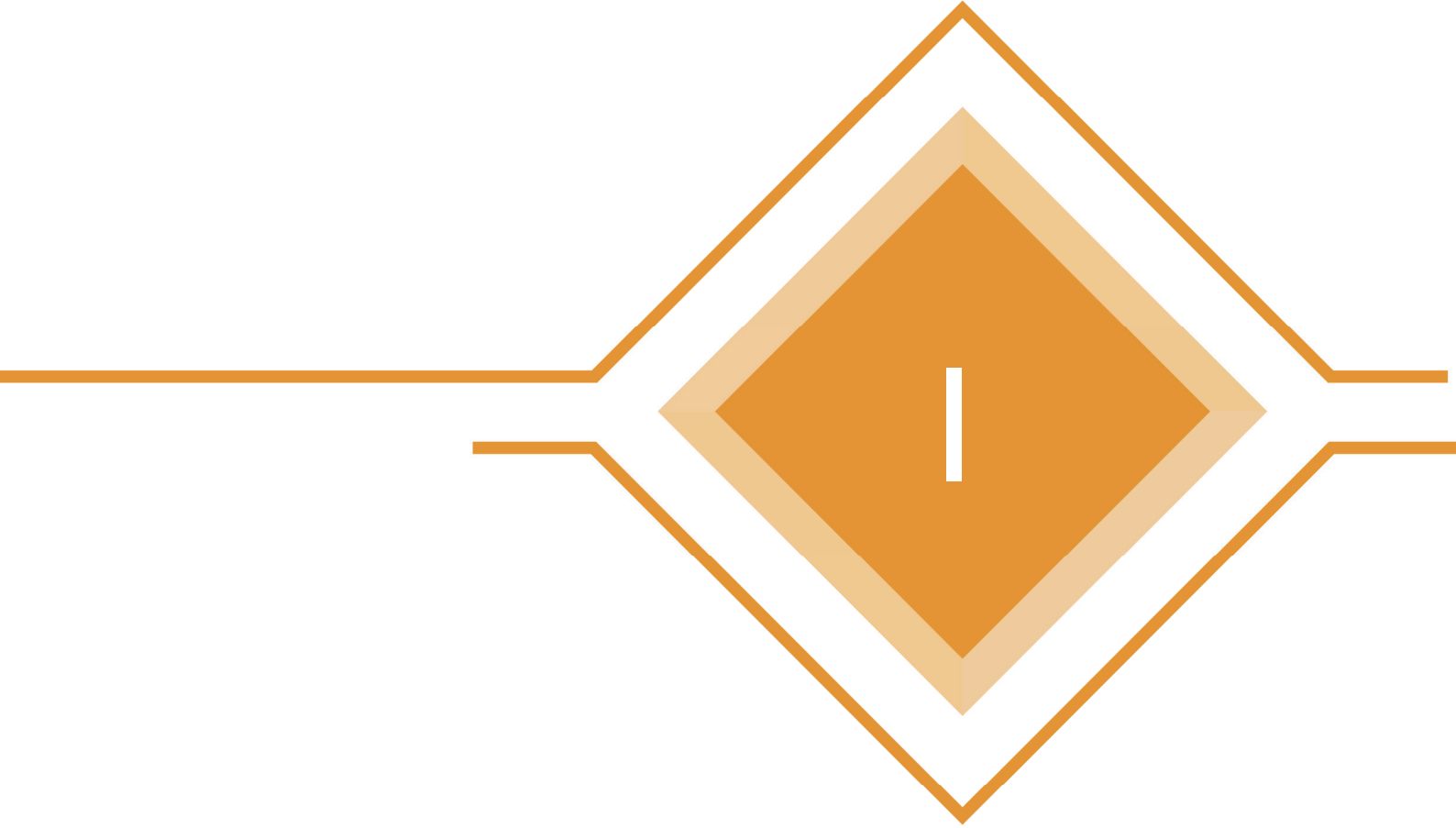
KOSTI 24-G0501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이행 가이드라인

2024

CONTENTS

1. 상황허가 품목 추가 개요	1
2. 상황허가 품목 판정·허가 절차 상세 설명	5
가. 판정 절차	7
나. 허가 신청 절차	12
다. 허가 심사기준 및 처리	14
라. 무허가수출에 대한 집행	16
3. 상황허가 주요 추가 품목 상세 설명	19
가. 기계	21
나. 전기전자	24
다. 소재	26
라. 화학	28
4. 기타 對러 제재 주의사항 안내	31
가. 미 상무부 제재	33
나. 미 재무부 / 국무부 제재	34
5. FAQ	35
가. 판정 관련	37
나. 허가 관련	42
다. 기타	48



상황허가 품목 추가 개요

상황허가 품목 추가 개요

상황허가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출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번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으로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시 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하는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기존 1,159개에서 243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1,402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금번 추가된 품목은 금속절삭가공기계, 동작기계부품, 광학기계부품, 센서 등 군용 전용(轉用)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서 HS 6단위 기준으로 지정되며, 고시 개정안 별표2의2 러시아·벨라루스 1,160~1,402번으로 등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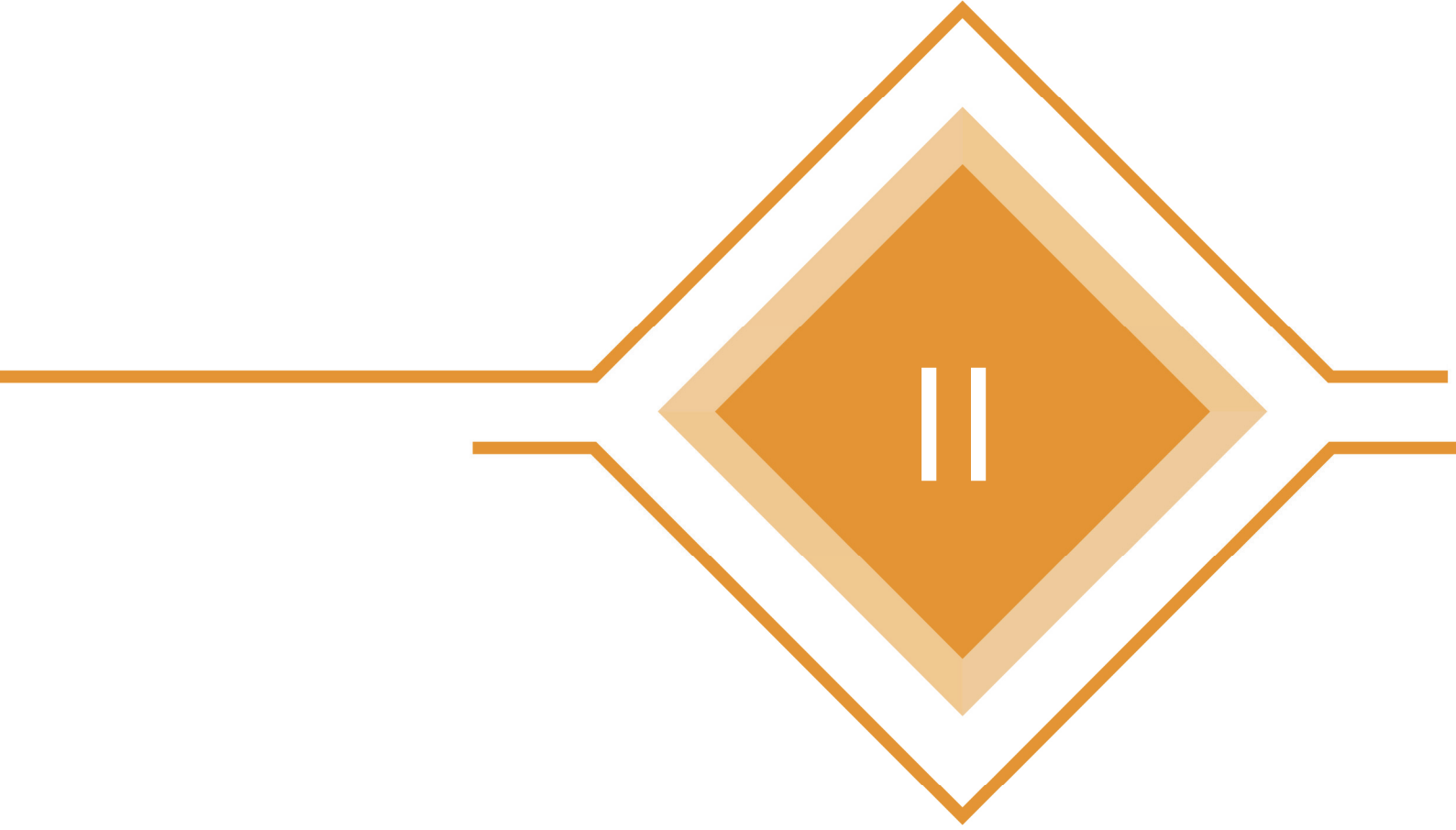
<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신규 추가 품목 (고시 별표 2의2 1,160~1,402번) >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

2. 러시아, 벨라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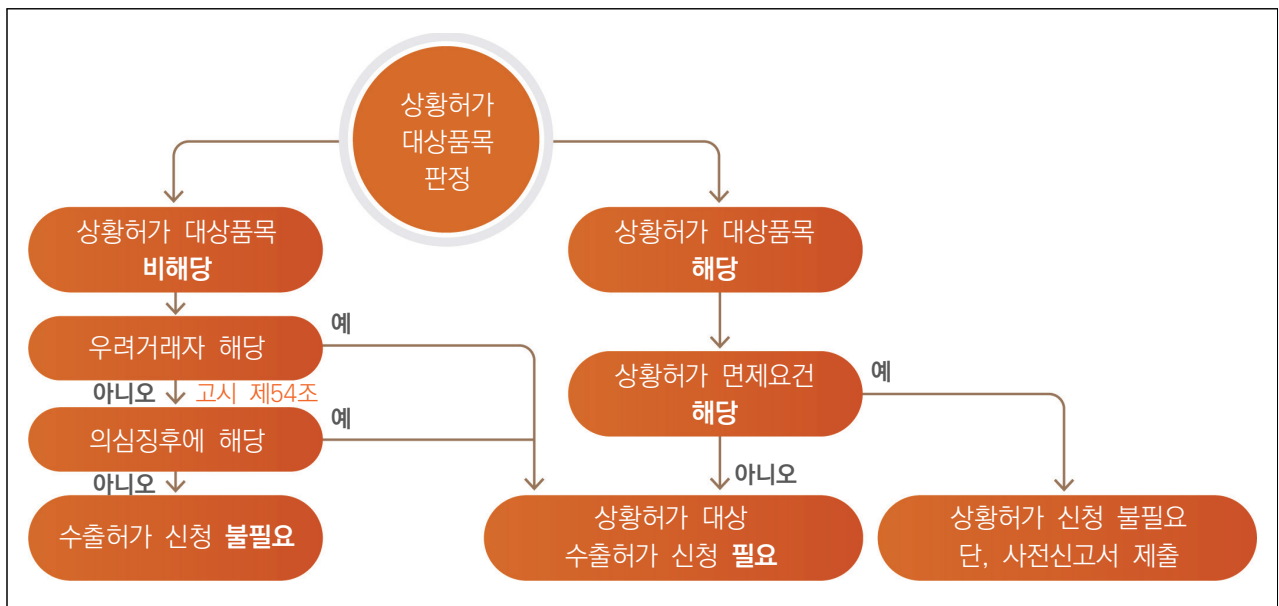
번호	대상품목	상세사항	Description	별표 2의2 관련 품목	HS code	수출 지역
1160	벤토나이트(하소한 것과 상관없음)		Bentonite, Whether Or Not Calcined	-	2508.10	러시아, 벨라루스
1161	점토(팽창된 것 제외)		Clays (Excluding Expanded Clays), Nesoi, Including Common Blue Clay And Other Ball Clays, Whether Or Not Calcined	-	2508.40	러시아, 벨라루스
1162	홍주석, 남정석, 규선석(하소한 것과 상관없음)		Andalusite, Kyanite And Sillimanite, Whether Or Not Calcined	-	2508.50	러시아, 벨라루스
~						
1401	재료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이나 그밖의 기계적·성질의 시험용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Parts And Accessories Of Machines Or Appliances For Testing Hardness, Strength, Compressibility, Elasticity Or Other Specific Properties Of Materials	-	9024.90	러시아, 벨라루스
1402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구·습도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Parts And Accessories For Hydrometers And Similar Floating Instruments, Thermometers, Pyrometers, Barometers, Hygrometers And Psychrometers.	-	9025.90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 판정 허가 절차 상세 설명

상황허가 품목 판정·허가 절차

〈 상황허가 품목 판정 및 허가 절차도 〉



가. 판정 절차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정이 필요하며, 상황허가 대상품목 판정을 위한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확인은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하여 확인하는 전문판정과 무역거래자가 스스로 확인하는 자가판정이 있습니다.

전문판정은 무역거래자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략물자관리원에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의뢰한 후 해당될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자가판정은 무역거래자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의2를 참고하여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스스로 확인한 후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 판정 결과를 등록하고 해당될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가입방법

먼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원 가입을 해야 하며,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접속 후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을 선택한 후 기업회원을 선택합니다.

일반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전문판정 신청, 수출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전문판정과 수출허가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회원으로 가입이 필요합니다.

2) 전문판정 신청방법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가입 이후,

- ①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대한 판정도 일반 전문판정과 동일하게 첫 화면에서 “전문판정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 ② “전문판정 신청”을 선택한 후 다음 화면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좌측에 “(상황)전문판정 신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② (상황)전문판정 신청

전략물자/기술
일괄신청

유효기간 만료
예정건 조회
60일 이내 무료 예정건 조회
새신청 방법 안내

산업용 : 전략물자관리원
 • 고객센터 (02-6000-6400)
 • FAX (02-6000-6420)

군용 :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 화학, 추진제 (02-2079-6832)
 • 총포, 방탄 (02-2079-6833)
 • 총기, 광학 (02-2079-6836)
 • 유도무기, 훈련장비 (02-2079-6837)
 • 항공, 기동 (02-2079-6838)
 • 탄약, 함정 (02-2079-6839)
 • 통신전자, 기타장비 (02-2079-6829)

- ③ 1단계 기본정보 등록에서 업체정보 및 담당자 정보를 기재한 후 거래자정보 등록에서 수입국(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中 택1)을 반드시 선택해야 국가별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대한 전문판정이 가능합니다.

- ④ 2단계 품목정보 등록은 일반 전문판정의 품목정보 입력방식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무기구분 항목은 신청하는 품목이 속하는 수출통제체제에 따라 대량파괴무기(NSG, MTCR, AG)와 재래식무기(WA)로 분류되거나 모르는 경우 필수 항목이 아니오니 그대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 ⑤ 3단계 신청서 정보에서 1단계 기본정보 및 2단계 품목/기술 정보에서 기재한 내용을 확인 후 최종적으로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 상황허가 대상 전문판정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자가판정 등록방법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스스로 확인한 무역거래자는 상황허가 자가판정 결과를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해당"일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해야만 하며, 상황허가 자가판정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첫 화면에서 “온라인 자가판정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 ② “(상황)자가판정 등록”을 선택 후 우측 화면의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 주의사항 :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비해당”으로 자가판정하거나, 허위 자료로 전문판정을 신청해 “비해당” 판정을 받아 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자가판정 결과 등록을 위해서 “온라인 자가판정 바로알기” 교육 동영상(약 25분 소요)을 시청합니다.
- ④ (상황)자가판정 등록은 1단계(기본정보 등록) → 2단계(품목/기술정보) → 3단계(신청서 정보)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기본정보 등록에서 업체정보 및 담당자 정보를 기재한 후 거래자정보 등록에서 수입국(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中 택1)을 선택해야 합니다.
- ⑤ 2단계(품목/기술정보)에서는 고시 별표 2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신 후 그 결과와 품목 관련 정보들(HS번호, 용도 등)을 “품목정보”에 기재해야 합니다. 품목정보를 작성하신 후 품목의 매뉴얼,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신청품목의 기술적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무기구분 항목은 그대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 ⑥ 3단계 신청서 정보에서 1단계 기본정보 및 2단계 품목/기술 정보에서 기재한 내용을 확인 후 최종적으로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 상황허가 대상 자가판정 등록을 완료합니다.

< HS 번호 검색에 따른 자가판정 예시 >

<p>❶ HS 6단위 기준 통제품목에 해당될 경우 → “해당”으로 자동 등록(“비해당” 입력 안됨)</p>	<p>(상황허가 대상품목) 자가판정 등록</p> <p>1단계 기본정보 2단계 품목/기술정보 3단계 신청서정보</p> <p>품목 정보 등록</p> <p>별표2-2의 산업용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대한 자가판정입니다. (별표2-2 품목의 품목명, 품목번호, 품목명, 품목번호를 입력하십시오.)</p> <p>입력한 HSK 번호는 별표2-2 상황허가 대상품목 1154번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확인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선택한 HSK가 맞으면 자가판정 결과 “해당”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통제번호</th> <th>상세사양</th> <th>관련 HSK</th> </tr> </thead> <tbody> <tr> <td>1154</td> <td>그 밖의 축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윤곽 투영기의 부분품과 부속품</td> <td>9031.90</td> </tr> </tbody> </table> <p>확인</p>	통제번호	상세사양	관련 HSK	1154	그 밖의 축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윤곽 투영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9031.90
통제번호	상세사양	관련 HSK					
1154	그 밖의 축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윤곽 투영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9031.90					
<p>❷ 품명·사양 기준 통제품목(전략물자 관련, 생화학 등)에 해당될 경우 → 상세 사양 확인 후 “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등록 가능</p>	<p>(상황허가 대상품목) 자가판정 등록</p> <p>1단계 기본정보 2단계 품목/기술정보 3단계 신청서정보</p> <p>품목 정보 등록</p> <p>별표2-2의 산업용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대한 자가판정입니다. (별표2-2 품목의 품목명, 품목번호, 품목명, 품목번호를 입력하십시오.)</p> <p>입력한 HSK 번호는 별표2-2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확인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될 경우 자가판정 결과 “해당”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통제번호</th> <th>상세사양</th> <th>관련 HSK</th> </tr> </thead> <tbody> <tr> <td>148</td> <td>트리부틸아민(CAS 102-82-9)</td> <td>2921.19-2000</td> </tr> </tbody> </table> <p>확인</p>	통제번호	상세사양	관련 HSK	148	트리부틸아민(CAS 102-82-9)	2921.19-2000
통제번호	상세사양	관련 HSK					
148	트리부틸아민(CAS 102-82-9)	2921.19-2000					
<p>❸ 통제품목 연계 HSK가 아닌 경우 → “비해당”으로 등록 가능 (다만, 정확한 판정을 위해 전문판정을 권고함)</p>	<p>(상황허가 대상품목) 자가판정 등록</p> <p>1단계 기본정보 2단계 품목/기술정보 3단계 신청서정보</p> <p>품목 정보 등록</p> <p>별표2-2의 산업용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대한 자가판정입니다. (별표2-2 품목의 품목명, 품목번호, 품목명, 품목번호를 입력하십시오.)</p> <p>입력한 HSK 번호는 자가판정 시 “비해당”으로 등록이 가능하나 HSK 번호 또는 별표2-2 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p> <p>또한 정확한 확인을 위해 전문판정을 권고 드립니다.</p> <p>확인</p>						

4) 주의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對리/벨 상황허가 품목 - HSK 연계표”를 제공하며, 연계표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다운로드) 가능합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yestrade' portal with a navigation menu and a sidebar.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상황허가대상품목) 온라인자가판정 시작'. A red box highlights a link: '[표표 2의2] 헐리아/벨리우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HSK 연계표'. Below this, there is a detailed notice explaining the HSK linkage process, including criteria for '해당' (Applicable) and '비해당' (Not Applicable) items based on HS codes and product names.

“對리/벨 상황허가 품목 - HSK 연계표”는 ① HS코드만으로 상황허가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1,159개 품목과 ② 품명·기술사양 기준으로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243개 품목과 관련된 HSK 연계표로 구분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HSK 연계표 조회를 통해 ① HS코드만으로 상황허가 대상여부가 결정되는 1,159개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자가판정시 “해당”으로 등록해야 하며, ② 품명·기술사양 기준으로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243개 품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자가판정 “비해당”으로 등록가능하나, HSK와 품명·기술사양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가판정이 아닌 전문판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 다만, ① HS코드만으로 상황허가 대상여부가 결정되는 1,159개 중 하나인 품목인 경우에는 전문판정이 아닌 자가판정을 진행해도 무방

나. 허가 신청 절차

1) 상황허가 신청방법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받은 무역거래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상황허가 신청은 1단계(기본정보 입력) → 2단계(품목/기술정보 입력) → 3단계(신청서 전송)으로 이루어집니다.

① 판정/허가신청 메뉴에서 수출허가 신청을 클릭한 후, 상황허가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수출허가 신청' (Export License Application) page. The '상황허가' (Situation License) ic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The interface includes a left sidebar menu, a main grid of license types, and a right sidebar with user profile and service icons.

② 1단계(기본정보 입력)에서 구매자, 최종사용자, 최종수하인, 제조자 정보를 입력한 후, 거래정보, 최종사용용도 등 주요 신청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상황허가 신청 사유를 선택합니다.

③ 2단계(품목/기술정보 입력)에서는 품목정보(상황 판정발급번호, HS번호, 통제체제, 물품명, 유/무상 여부, 단가, 수량, 중량, 형식 및 규격, 사용용도)를 입력합니다.

④ 3단계(신청서 전송)에서는 1단계와 2단계 신청정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여 상황허가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물품의 경우) 또는 제2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기술의 경우)까지 정하는 각각의 서류(전략물자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의 구비서류 안내문('24.5.10.) 참조)

2) (허가면제 해당시) 사전신고서 신청 절차

허가를 면제받은 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4 사전신고서(주의: 별지 제16호 수출거래보고서 불인정)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신고서 신청은 1단계(기본정보 입력) → 2단계(품목/기술정보 입력) → 3단계(신청서 전송)으로 이루어집니다.

- ①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 접속합니다. → 첫화면 상단의 “기타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 “사전신고”를 클릭합니다.

번호	구분	분야	민원신청명	신청	담당기관	인증서
5	기타민원	사전신고	사전신고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Y
4	기타민원	수출거래보고	수출거래보고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Y
3	기타민원	수입목적확인서	수입목적확인서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Y
2	기타민원	방산업제지정	방산업제지정	신청	방위사업청	Y
1	기타민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Y

- ② 1단계(기본정보 입력)에서 신청자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수출허가 면제사유를 선택합니다. 면제사유에 대한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또한 최종사용용도를 명확하게 입력합니다.
- ③ 2단계(품목/기술정보 입력)에서는 품목정보(판정발급번호, HS번호, 통제체제, 물품명, 단가, 수량, 중량, 형식 및 규격, 사용용도 등)를 입력합니다.
- ④ 3단계(신청서 전송)에서는 1단계와 2단계 신청정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녹색의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사전신고서 제출을 마칠 수 있습니다.
- ⑤ 기업의 사전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는 “접수 중”으로 표기됩니다.
- ⑥ 이후 사전 신고서에 이상이 없고, 허가기관에서 사전 신고서 접수가 완료되면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는 “접수완료”로 표기됩니다. (사전신고서 제출의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 허가 심사기준 및 처리

1) 허가 심사기준

산업통상자원부는 상황허가 품목의 對리/벨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고시 [별표24]에 규정된 사안별 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안별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황허가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對리/벨 수출이 금지됩니다.

〈 사안별 심사 대상 〉

1. 선박 및 항공기 안전
2. 민간 원자력 안전
3. 인도적 지원
 - * 의약품, 의료기기, 식료품 지원에 한정
4. 우리나라 또는 별표 6의 가 지역에 설립된 기업이 소유하거나 지배(전부 또는 공동 지배)하는 회사가 최종사용자인 경우
5.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대해 아래에 해당하는 날까지 거래계약 체결이 완료된 경우
 - * 통제번호 1~57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2년 2월 27일까지 완료된 경우
 - 통제번호 58~231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3년 4월 27일까지 완료된 경우
 - 통제번호 232~1,159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4년 2월 23일까지 완료된 경우
 - 통제번호 1,160~1,402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제35차 고시 시행일 전까지 완료된 경우

상황허가 심사시에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2조에 따른 개별수출허가의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 상황허가 심사 기준 〉

1. 전략물자 해당 여부
2. 수입국
3.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군사·외교적 민감성
4.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여부
5.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와 최종사용자가 서약한 사용용도의 신뢰성
6. 제3국으로 재수출 될 가능성
7. 수출자,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우려거래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8. 국제기구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제1호~제7호의 사항에 대한 주의 필요성 제기 여부

2) 허가의 면제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면제되며, 이 경우 허가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지 1의4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부분품을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2.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공용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재외공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과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사무소를 포함한다.
3. 수입한 품목을 그 제조업체 또는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4. 허가를 받아 수출한 품목을 고장, 성능미달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여 수리, 대체한 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 긴급한 수리, 대체 필요가 있어 기존에 수출했던 품목과 같은 품목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재차 수출한 후 기존에 수출했던 품목은 재차 수출통관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1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6. 다른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송용기 등을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1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7. 보정, 수리를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1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8. 검사, 시험을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5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5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9. 외국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당초 이전한 자에게 재이전하는 경우
10. 정부 및 국제기구 지원
 - * 대한민국 정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대한 지원 한정
11. 소비자 통신제품 거래
 - *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정

소비자 통신제품 등이란 일반인이 제한 없이 소매점 또는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서 아래에 한정한다.

- (1) 컴퓨터(소비자용 태블릿, 노트북에 한정), 마이크, 스피커, 헤드폰
- (2) 모니터
- (3) 프린터
- (4) 키보드, 마우스, 관련 유사장치
- (5)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가입자 모듈(SIM) 카드
- (6) 바이러스 백신, 사용자 인증, 암호 관리자 등 소비자 정보보안 장비
- (7) 디지털카메라
- (8) 텔레비전 및 라디오 수신기, 셋톱박스
- (9) 녹화 및 녹음 장치
- (10) 제1호부터 제9호에 설명된 장비의 운반 케이스와 부속품
- (11) 출판물, 영화, 포스터, 음반, 사진과 이들을 저장한 마이크로필름, 테이프, 콤팩트디스크(CD)로서 별표 2 또는 별표 2의2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포함하지 않은 것

3) 허가의 처리기간

상황허가 처리기간은 상황허가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이나, 다음을 위해 소요되는 일수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 해당 품목에 대한 별도의 기술심사
2. 해당 품목의 수출에 관련된 행정기관과의 협의
3. 해당 품목 관련 국가와의 협의
4. 해당 품목의 현지 조사
5. 수출허가 심사를 위한 서류 보완
6. 해당 품목의 수출과 관련된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국제기구 등과의 협의

라. 무허가수출에 대한 집행

1) 행정처분

상황허가를 획득하지 않고 무허가수출을 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제3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전락물자 등의 수출입제한 및 제49조에 따른 교육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법처벌

상황허가를 획득하지 않고 무허가수출을 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액 5배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허가 위반 사례 〉

❶ 판정을 하지 않고 수출(A社)

: 전락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한 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메모리’를 러시아로 수출
→ 대외무역법 위반, 행정처분 부과

❷ 정확한 확인없이 자가판정 ‘비해당’으로 판정하여 수출(B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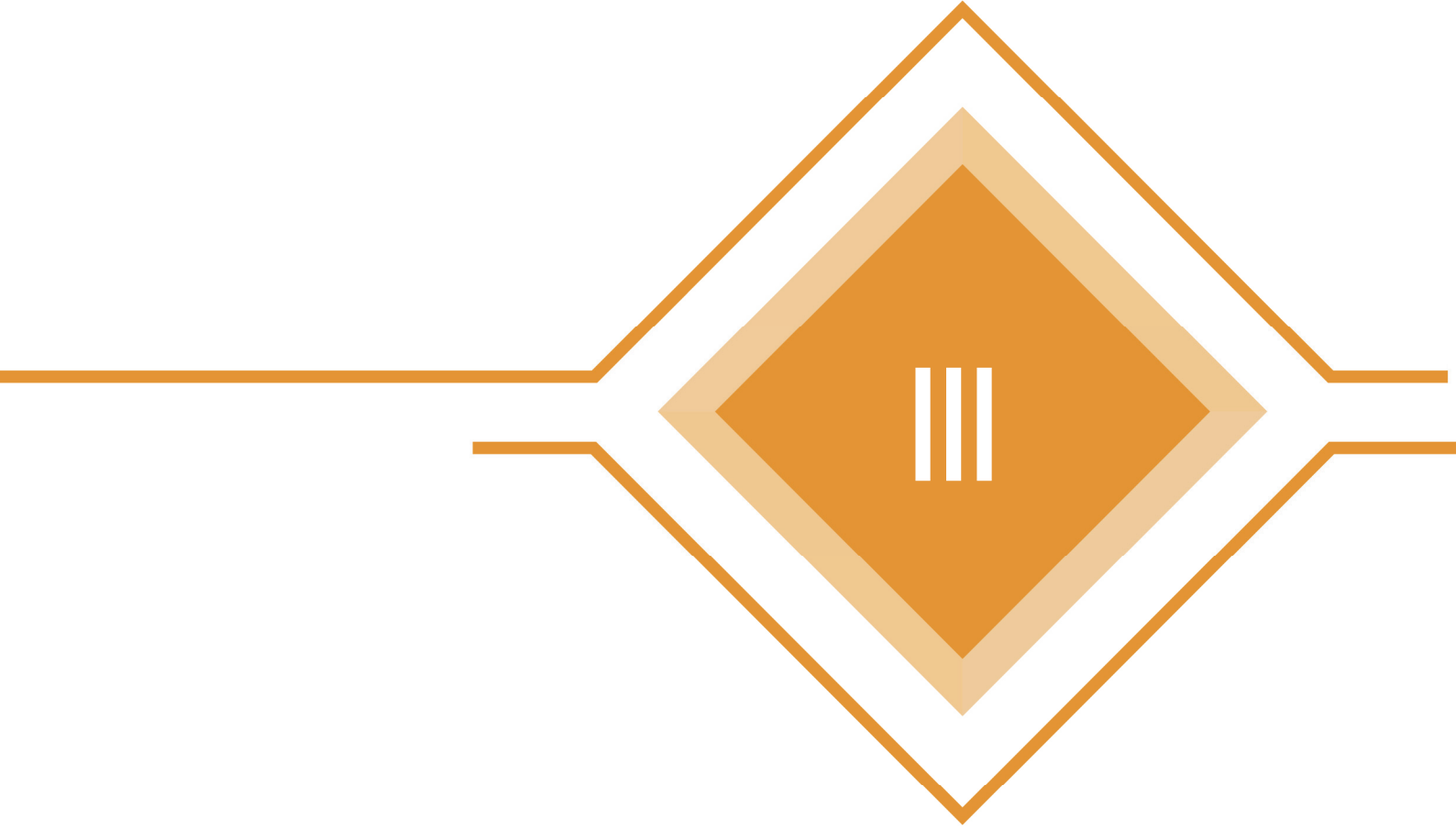
: 상황허가 품목에 해당되는 ‘공작기계’를 러시아로 수출하고자 수출신고를 하였고 통관 단계에서 세관으로부터 판정서 제출을 요청받자 정확한 검토없이 자가판정 “비해당”으로 입력 후 세관에 제출 후 수출
→ 대외무역법 위반, 행정처분 부과

③ 상황허가 판정이 아닌 전략물자 판정 후 상황허가 품목을 수출(C社)

: 통관단계에서 세관으로부터 판정서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상황허가 판정은 생략한 채 전략물자 자가판정만을 진행. 전략물자 비해당 판정 결과를 근거로 상황허가 품목인 ‘네트워크 컨트롤러 등’을 러시아로 수출
→ 대외무역법 위반, 행정처분 부과

④ 상황허가 품목 우회수출(D社)

: ‘항공기 부품’을 러시아로 수출하려다 통관단계에서 적발되어 수출신고를 취소했으나, 이후 동일·유사품을 러시아 인접국을 통해 우회수출 시도
→ 세관에서 정황 포착하여 압수수색 등 조사 후 검찰 송치



상황허가 주요 추가 품목 상세 설명

신규 상황허가 품목 상세 설명

가. 기계

보일러 부속기기 및 부분품, 가스발생기

보일러 부속기기, 응축기 및 부분품, 가스발생기

보일러 부속기기/ 부분품



가스발생기



▶ 통제번호 : 1336~1339번

▶ HS code :
8404.10, 8404.20, 8404.90,
8405.10

▶ 대상품목 :
보일러 부속기기 : 1336번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 1337번
이의 부분품: 1338번
가스 발생기 : 1339번

사진출처: <https://www.babcock-wanson.com>, <https://idealheating.com>, <https://www.directindustry.com>, <https://www.gensetpower.com>

연료 · 운할유 급유용 펌프, 냉각 냉매용 펌프



연료 · 운할유 급유용 펌프, 냉각 냉매용 펌프

연료 · 운할유 급유용 펌프



냉매용 펌프



▶ 통제번호 : 1340~1341번

▶ HS code :
8413.11, 8413.30

▶ 대상품목 :
연료 · 운할유 급유용 펌프(주유소
나 정비소 사용 형태) : 1340번

연료 · 운할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
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
1341번

사진출처: <https://www.smartflowtech.com>, <https://pumpexpress.co.uk>

분무용 기기, 포크리프트트럭 부분품



분사용 · 살포용 · 분무용 기기, 포크리프트트럭 부분품

분사용 · 살포용 · 분무용 기기



▶ 통제번호 : 1346, 1347번

▶ HS code :
8424.89, 8431.20

▶ 대상품목 :
분사용 · 살포용 · 분무용 기기
: 1346번

포크리프트트럭/작업 트럭 부분품



포크리프트트럭/작업 트럭 부분품
: 1347번

사진출처: <https://www.alibaba.com>, <https://www.admix.com/>, <https://www.toyotaforklift.com/lifts>, <https://www.raymondcorp.com>



수동 공작기계, 가공기계 등

수동 선반/드릴링 머신, 굽힘기, 금속 전단기, 금속 편칭기

수동선반/드릴링머신 굽힘기



▶ 통제번호 : 1350~1363번

▶ HS code :
8458.19, 84584.99, 8459.29,
8405.10

▶ 대상품목 :
수동 선반/드릴링머신:
1350, 1351, 1352번

금속 전단기



금속 편칭기



굽힘기: 1357번

금속 전단기: 1358, 1359번

금속 편칭기: 1360, 1361번

형·강봉 가공용 기계: 1363번

사진출처: <https://toolpicks.com/machines/types-of-drilling-machines>, <https://www.livmakina.com>, <https://www.lvdgroup.com>, <https://www.boschertusa.com>



톱기계, 연마기/광택기, 기타 (공작)기계/부분품

연마기/광택기, 기타 (공작)기계/부분품

연마기/광택기



▶ 통제번호 : 1367~ 1373번

▶ HS code :
8464.10, 8464.20, 8464.90
8465.96, 8466.91, 8466.92
8466.94

▶ 대상품목 :
연마기/광택기: 1368번

기타 (공작)기계/부분품



기타 (공작)기계: 1368~1372번

기타 금속가공 공작기계 등의 부
분품: 1373번

사진출처: <https://kef-motor.dk>, <https://www.hoffmann-group.com>, <https://www.cptrader.com>, <https://macrodynepress.com/>

납땜용 · 땀질용 · 용접용 기기, 개스킷/조인트



납땜용 · 땀질용 · 용접용 기기, 개스킷/조인트

납땜용 · 땀질용 · 용접용 기기



개스킷/조인트



▶ 통제번호 : 1375~ 1377번,
1381번

▶ HS code :
8468.80, 8468.90, 8484.90

▶ 대상품목 :
납땜용 · 땀질용 · 용접용 기기
: 1375~1377번

개스킷/조인트: 1381번

사진출처: <https://www.millerwelds.com>, <https://connectorsupplier.com>, <https://www.nbseals.com>, <https://www.pipingengineer.org>

나. 전기전자

전기식 조명용/신호용 기구, 전열용 저항체



전기식 조명용/신호용 기구 및 부분품, 전열용 저항체

전기식 조명용/신호용 기구 및 부분품



▶ 통제번호 : 1384번, 1385번,
1386번

▶ HS code :
8512.20, 8512.90, 8516.80

▶ 대상품목 :
전기식 조명용/신호용 기구 및 부
분품: 1384번, 1385번

전열용 저항체: 1386번

전열용 저항체



사진출처: Maglite, Mypallas, Tefal, Hanil

라디오 방송 수신기, 자동차단기, 필라멘트 램프



라디오 방송 수신기, 자동차단기, 필라멘트 램프

라디오 방송 수신기



▶ 통제번호 : 1387번, 1388번, 1389번

▶ HS code : 8527.21, 8535.21, 8539.29

▶ 대상품목 : 라디오 방송 수신기: 1387번

자동차단기: 1388번

필라멘트 램프: 1389번

자동차단기



필라멘트 램프



사진출처: Britz, SYS, LS, Edison

영화용 촬영기, 시험용 기타 기기, 온도계 등 부분품



영화용 촬영기, 시험용 기타 기기, 온도계 등 부분품

영화용 촬영기



▶ 통제번호 : 1397번, 1388번, 1400번, 1401번, 1402번

▶ HS code : 9007.10, 9007.91, 9015.20, 9024.80, 9024.90, 9025.90

▶ 대상품목 : 영화용 촬영기/부분품: 1397번, 1398번

시험용 기타 기기: 1400번, 1401번

온도계 등 부분품: 1402번

시험용 기타 기기



온도계 등 부분품



사진출처: ARRI, Quro, Mestek, Wikipedia

다. 소재

토석류, 도자제, 유리, 구리, 공구류(1/4)



토석류 · 석고, 도자제의 제품

벤토나이트



도자제 건설용품



▶ 통제번호 : 1,160번 ~ 1,303번

▶ HS :2508.10 ~ 6907.22

▶ 상세사양 :

1,160번 : HS 2508.10 / 벤토나이트
(하소한 것과 상관없음)

1,161번 : HS 2508.40 / 점토 (팽창된 것 제외)

1,302번 : HS 6905.90 / 굴뚝통 · 굴뚝 갓 · 굴뚝용 내장재 · 건축용 장식품과 그 밖의 도자제의 건설용품

1,303번 : HS 6907.22 /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 · 노(爐)용 · 벽용 타일

사진출처: <https://www.blick.group/news-articles/what-is-bentonite>, <https://www.petervaldivia.com/construction-materials/>

토석류, 도자제, 유리, 구리, 공구류(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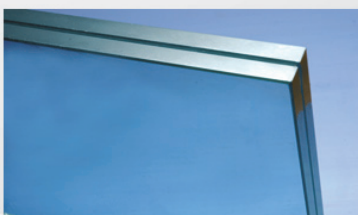


유리와 유리로 만든 제품

유리로 만든 구



접합 안전유리



▶ 통제번호 : 1,304번 ~ 1,319번

▶ HS :7002.10 ~ 7011.10

▶ 상세사양 :

1,304번 : HS 7002.10 / 유리로 만든 구(球) [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인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는 제외]

1,308번 : HS 7003.12 / 주인법과 롤(roll) 법으로 제조한 망입(網入)하지 않은 시트(sheet) 유리

1,314번 : HS 7005.10 /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

1,318번 : HS 7007.29 / 접합 안전유리

사진출처: <https://dho.shop/products/crystal-glass-ball-50-350-mm/crystal-glass-ball-110-mm-dear-443.html?language=en>, <https://www.gvsafetyglass.com/safety-glass/safety-glass-laminated-toughened-tempered-or-coated/>

토석류, 도자제, 유리, 구리, 공구류(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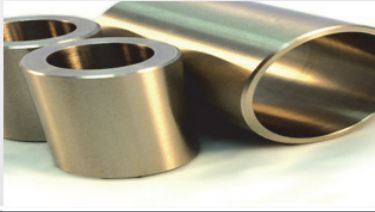


구리 제품과 기타 비철금속

구리합금 봉



주석합금



▶ 통제번호 : 1,320번 ~ 1,329번

▶ HS : 7106.91 ~ 8001.20

▶ 상세사양 :

1,320번 : HS 7106.91 / 가공하지 않은 은(Silver)

1,322번 : HS 7407.10 / 정제한 구리나 구리합금으로 만든 봉과 프로파일

1,327번 : HS 7415.21 / 구리로 만든 와셔 (washer)

1,329번 : HS 8001.20 / 주석 합금으로 된 괴

사진출처: <https://www.cut2sizemetals.com/copper/round/krd/>, <https://blog.thepipingmart.com/metals/properties-of-zinc-and-tin-alloys/>

토석류, 도자제, 유리, 구리, 공구류(4/4)



톱날, 칼·칼날, 영구자석 등

원형 톱날



가공용 칼



▶ 통제번호 : 1,330번 ~ 1,383번

▶ HS : 8202.20 ~ 8505.19

▶ 상세사양 :

1,330번 : HS 8202.20 / 띠톱의 날, 원형 톱날 [슬리팅(slitting)이나 슬로팅(slotting) 톱날을 포함]

1,331번 : HS 8208.10 / 금속 가공용 칼과 절단용 칼날

1,332번 : HS 8208.20 / 목재 가공용 칼과 절단용 칼날

1,383번 : HS 8505.19 / 금속을 제외한 기타 재질로 만든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사진출처: <https://www.habakogroup.com/en/product/fridon-saw-blades-2/>, <https://deepwoodventures.com/products/sms-sapel-cover-woodcarving-knife>

라. 화학

각종 화학공업 재료 및 그 제조품 (1/4)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필름 등

유연용 추출물과 착색제



▶ 통제번호 : 1,178번 ~ 1,210번

▶ HS : 3201.10 ~ 3706.10

▶ 상세사양 :

1,178~1,182번: HS3201.10~3202.90
/ 식물성 유연용 추출물과 유연제

1,183~1,184번: HS3203.00~3204.90
/ 식물성, 동물성, 합성 착색제

1,185~1,190번: HS3205.00~3212.90
/ 안료와 그 조제품

1,193~1,210번: HS3701.91~3706.10
/ 사진필름 및 영화용 필름

필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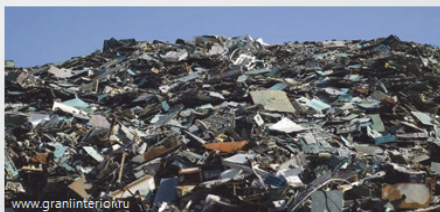


각종 화학공업 재료 및 그 제조품 (2/4)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화학공업 폐기물



▶ 통제번호 : 1,211번 ~ 1,228번

▶ HS : 3806.20 ~ 3827.90

▶ 상세사양 :

1,213~1216번 : HS 3809.10~93
/ 섬유, 제지산업 등의 가공제, 조제품 등

1,217~1,225번: HS3811.11~3824.81
/ 조제첨가제, 복합가소제, 촉진제 등

1,226번 : HS 3825.90 / 화학공업에 따
른 폐기물

1,227번 : HS 3826.00 /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



각종 화학공업 재료 및 그 제조품 (3/4)



플라스틱과 그 제품

플라스틱 관, 파이프, 호스 등



<https://www.gsteels.com/tubings-made-of-rigid-plastics>

플라스틱 문, 창틀



https://www.indexbox.io/blog/product/doors_windows_and_their_frames_and_thresholds_for_doors_of_iron_steel_or_aluminium/

▶ 통제번호 : 1,229번 ~ 1,258번

▶ HS : 3902.90 ~ 3925.20

▶ 상세사양 :

1,229~1,239번: HS3902.90~3906.10 / 폴리머(일차제품)

1,240~1,244번: HS3907.21~3908.90 /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미드 등

1,246~1,251번: HS3915.20~3917.33 / 플라스틱의 관, 파이프, 호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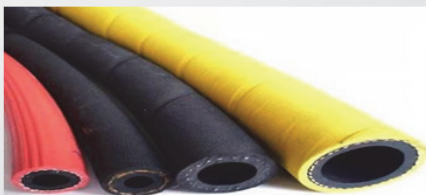
1,252~1258번 : HS3920.10~3925.20 / 플라스틱의 판, 시트, 필름, 건축용품 등

각종 화학공업 재료 및 그 제조품 (4/4)



고무와 그 제품

고무재질의 관, 파이프, 호스



<https://www.justdial.com/jdmart/Coimbatore/Rubber-Hose-Pipe/jdm-1155442-ent-2-17733696>

고무 공기타이어



<https://www.ultimateglobalexim.com/RetreadedUsedRubberTyres>

▶ 통제번호 : 1,259번 ~ 1,297번

▶ HS : 4002.20 ~ 4012.90

▶ 상세사양 :

1,259~1275번:HS4002.20~4008.21 /고무 판, 시트, 스트립 및 라텍스

1,276~1,277번 : HS4009.12~41 /고무 재질 관, 파이프, 호스

1,278~1,286번 : HS 4010.11~39 /고무 재질 컨베이어 용 벨트

1,287~1,293번 : HS 4012.11~90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

화학공업 설비 및 그 부분품



보일러, 버너(burner) 등과 이들의 부분품

응축기



▶ 통제번호 : 1,336번 ~ 1,344번

▶ HS : 8404.10 ~ 8416.90

▶ 상세사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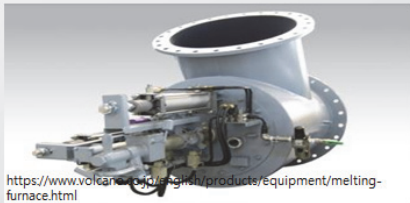
1,336번 : HS 8404.10 / 증기발생보일러나 과열수보일러, 중앙난방용 보일러의 부속기기

1,337번 : HS 8404.20 / 증기원동용 응축기

1,342번 : HS 8416.20 / 노용 버너 (Furnace Burners)

1,343번 : HS 8416.30 / 기계식 스토커(stoker)

버너(burner)



A decorative graphic consisting of a central diamond shape. The diamond is filled with a dark orange color and has the Roman numeral 'IV' written in white in the center. This central diamond is surrounded by a white border, which is further enclosed by a thin orange line. The entire graphic is set against a white background with horizontal orange lines extending from the left and right sides.

IV

기타 對러 제재 주의사항 안내

기타 對러 제재 주의사항 안내

가. 미 상무부 제재

국내법령에 따른 사항허가 통제 외에 미 정부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는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무부는 Entity List 등 제재대상자를 추가 지정하여 러시아,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를 지속 강화할 전망이므로, 최종사용자 등 거래상대방이 제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ntity List 등 우려거래자 해당 여부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우려거래자 검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Yestrade portal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제도 안내', '판정/허가신청', '기타민원 신청',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알림/정보마당', '이용안내', and the '산업통상자원부' logo. Below the navigation are three main service cards: '자가판정', '전문판정', and '수출허가'. A search bar is located below these cards. At the bottom, there is a '공지사항' (Notice) section and a '자주 찾는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Use frequently used services) section. In the '자주 찾는 서비스' section, the '우려거래자 검색' (Sanctions Search) ic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공지사항	자주 찾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실적보고(24년도 상반기) 24.07.01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사전... 24.06.28 제34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안내(6.21) 24.06.24 「2024년 무역안보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추천 제... 24.06.21 「2024년 무역안보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추천 공... 24.06.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려거래자 검색 수출거래 보고서 작성 수입목적확인 발급신청 방산업체 지정 신청 정기보고 작성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② 단체 또는 개인명 등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상환허가 신청여부 판단을 위해 우려품거자를 검색하실 분은 [여기](#) 를 클릭하세요.

우려품거자 검색 매뉴얼 다운로드

단체(개인)명 국가

소재지 별칭

! FULL NAME의 회사명(영문)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나. 미 재무부 / 국무부 제재

현재 미 재무부는 러시아, 벨라루스 제재의 일환으로 SDN 리스트(금융자산 동결) 및 Non-SDN 리스트(특정 금융거래 제한) 등을 발표하고 있으며,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제재리스트 검색 사이트 >

미 정부 통합 제재리스트 검색 사이트 주소

<https://www.trade.gov/consolidated-screening-list>

SDN 리스트에 등재된 제재대상자와 거래시 수출입 대금 결제가 제한될 수 있으며, 거래한 기업도 SDN으로 지정될 수 있는 바, 거래를 중단 또는 자제해야 합니다.

東亞日報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A08면 종합

美, 러에 반도체 장비 무단 수출한 한국인 첫 제재

부산 거주하며 러 기업 대리인 활동
美재무부 대러 제재 위반 명단 포함
서울세관, 관세법 위반 혐의檢송치

미국이 12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관련 제재를 단행하면서 한국인 이동진 씨(61)를 대상에 포함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 씨는 러시아 기업 AK마이크로테크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인이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제재 이행을 위해 동맹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은 이날 대(對)러시아 제재를 위반한 150개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면서 이 씨를 포함했다. AK마이크로테크는 무기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기술을 외국에서 들여와 러시아 반도체 기업에 이전하는 기업으로, 올 6월 미 제재 대상에 올랐다. 재무부는 이 씨가 자신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한국, 일본, 미국에서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AK마이크로테크에 넘기는 것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국내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13일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한국인이 처음 포함된 것에 대해 "해당 인사는 우리 관계당국에서 이미 대러 불법 우회 수출 혐의 등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세관은 이 씨를 허가 없이 러시아로 반도체 장비·부품을 수출했다는 혐의(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큰 첨단산업 물품 등 798개 품목 수출을 통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이 씨는 러시아 업체와 공모해 중국 루트를 활용하기로 한 뒤, 별도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러시아에 수출이 금지된 반도체 생산 관련 장비 등을 중국을 통해 보냈다. 이후 이 장비들은 러시아로 흘러들어가간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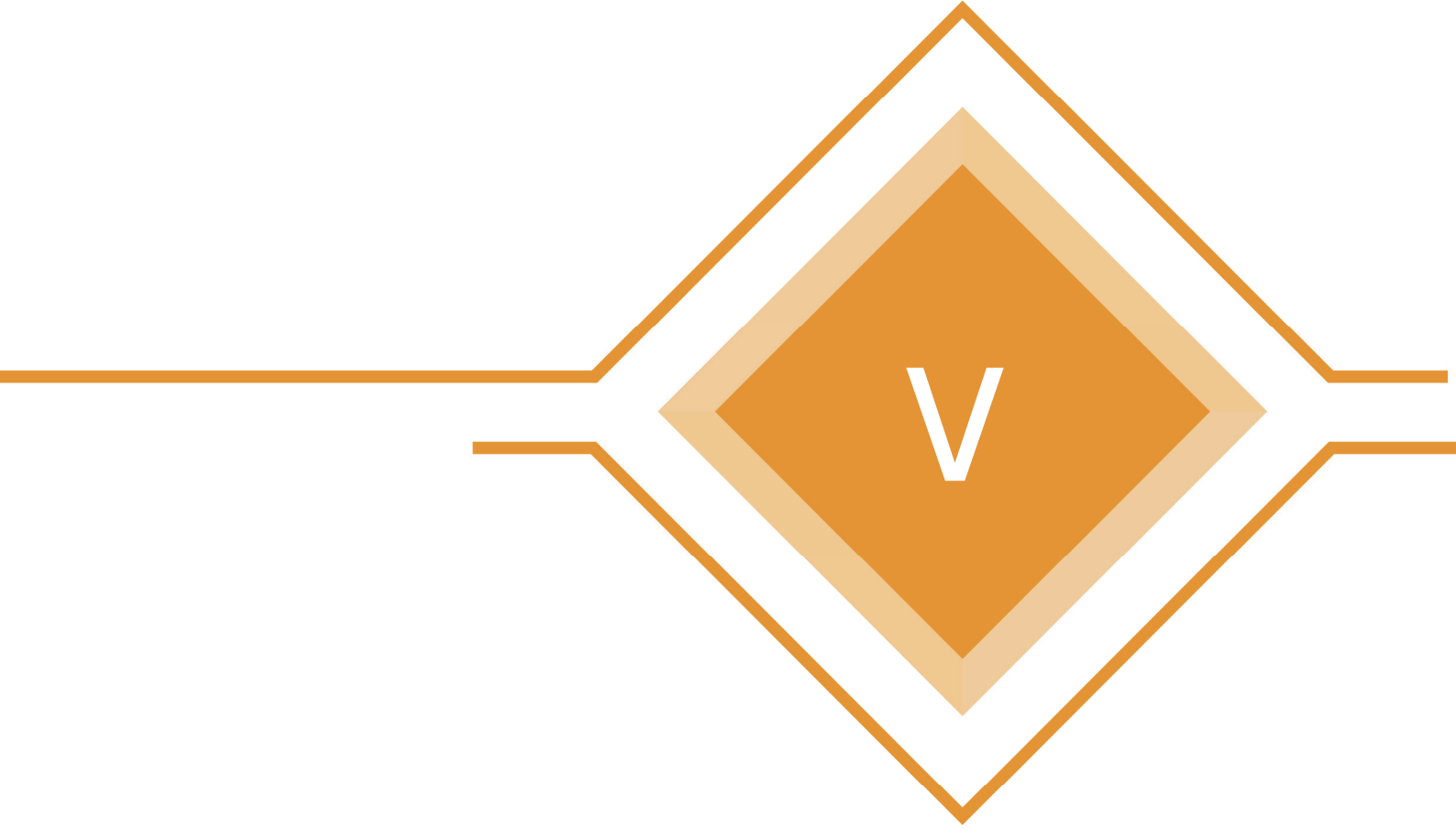
미국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반도체 기술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OFAC은 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씨를 제재하

면 시면과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이 씨와 거래하는 한국 및 미국 금융사 또한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침략) 전쟁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제3국 행위자에 대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실천한 것이며, 러시아의 군수품 조달 등을 노렸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도 "앞으로도 우회 수출 방지 등 기존 대러 제재 조치의 실효적 이행 노력을 강화하며 한미 간에도 계속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사용된 선박 및 선박회사 등을 제재했다. 100여 개 기관과 개인은 물론이고 마리아호, 아쿠보비치호, 체르니셰프호 등 러시아 선박 3척과 이들 선박을 소유한 IBEX 해운 및 아지아 해운 등이 포함됐다. 마리아호 등은 올 10월부터 무기가 실린 컨테이너를 북한에서 러시아로 운송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신구진 기자



FAQ

FAQ

가. 판정 관련

Q1.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가 개정되면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벨라루스向 수출 시 변경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이 되면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물품이 종전 1,159개 품목(기술 포함)에서 243개 품목이 추가되어 1,402개로 확대됩니다.

금번 추가되는 243개 품목은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금속절삭가공기계,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이며, 향후 고시가 시행되면 해당 품목을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고시 시행일 이전에 해당 품목을 수출하거나 또는 고시 시행일 이전에 수출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시 시행일 이후에는 해당 품목의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안별 심사(case by case review)를 통해 허가 여부가 판단됩니다.

* ① 고시 시행 전 既계약분 수출시, ②100% 자회사向 수출시 등

추가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별표 2의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메뉴 참조

Q2.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 시 추가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해당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해 확인하는 ‘전문판정’과 무역거래자가 스스로 확인하는 ‘자가판정’이 있습니다.

전문판정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판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가판정은 무역거래자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스스로 확인하여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그 결과를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판정신청, 절차, 판정기관 정보 등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www.yestrade.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대한 전문판정 신청시, 판정기관은 어디인가요?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판정 처리기간은? 판정 유효기간은?

판정기관은 전략물자관리원입니다. 판정 신청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가능합니다.

제출하는 서류로는 ①매뉴얼, 상품안내서 등 성능·용도·기술 설명자료, ②그밖에 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판정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전문가 자문, 신청서류 보완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전문판정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Q4. 자가판정의 효력은 전문판정의 효력과 동일한가요? 자가판정 과정에서 상황허가 해당 품목을 비해당으로 잘못 판정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요?

자가판정과 전문판정 모두 효력이 동일하며, 자가판정은 전문판정에 비해 소요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판정주체가 기업이므로 잘못된 판정 결과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허가 받지 않고 수출할 경우엔 무허가 수출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수출물품의 HSK 번호로 러시아·벨라루스로의 상황허가 대상품목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요?

對러/벨 상황허가 품목은 ① HS코드만으로 상황허가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품목(1,159개)과 ② 품명·기술사양 기준으로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품목(243개)으로 구분됩니다.

① HS코드만으로 상황허가 대상여부가 결정되는 품목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별표2-2에 관련 HS 코드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HS 코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② 품명·기술사양 기준으로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품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 신청을 통해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6. 향후 고시가 개정되면 기존에 발급받는 상황허가 대상품목 판정서는 유효한가요?

고시 개정에 따라 상황허가 대상품목, 통제기준 및 통제번호 등이 변경되므로 금번 제35차 고시개정 시 추가되는 243개 품목(HS 6단위)과 관련된 기존에 발급받은 상황허가 대상품목 판정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6조) : 통제품목의 통제기준 강화, 완화, 통제번호 변경 등 통제기준이나 통제번호에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그 개정 고시일에 해당 전문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금번 제35차 고시개정 시 추가되는 243개 품목(HS 6단위)과 관련된 기존에 발급받은 자가판정서 또는 전문판정서는 고시 개정일 즉시 유효기간이 만료되므로 새롭게 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판정 건에 대해서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고시 시행 전에 메일과 SMS로 해당되는 기업에 별도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Q7.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구성품으로 포함된 완제품(완제품은 상황허가 대상 품목 비해당)을 러시아나 벨라루스로 수출하는 경우, 완제품을 상황허가 대상품목으로 간주하는지요?

부분품이 분리가 가능하여 분리후에도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고, 부분품이 전체 완제품의 가격대비 10% 이상인 경우이거나, 부분품이 전체 제품의 성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부분품의 판정 결과에 따라 완제품의 판정결과도 결정됩니다.

Q8. YESTRADE에서 자가판정을 등록했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자가판정서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자가판정”은 판정 신청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가판정은 등록 후 전략물자관리원이 별도로 심사 또는 승인하지 않습니다.

자가판정 결과로 발생한 문제(예: 상황허가 대상 품목 “해당”인 품목을 “비해당”으로 판정하셔서 상황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수출을 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으므로 자가판정 시 신중한 판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9. 잘못 판정한 자가판정서를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에 등록했습니다. 혹시 불이익이 있습니까?

판정을 잘못된 자가판정서(예: “상황허가 대상 품목 해당”인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 품목 비해당”으로 판정)를 자가판정서를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에 등록한 것만으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잘못 판정한 자가판정서를 세관 등 외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0. 하나의 품목이 복수의 통제규정에 따라 통제될 경우(예시 : 선박 엔진은 통제번호 44.g번, 959번에 의해 복수 통제) 판정서는 어떻게 발급되는지요?

하나의 품목이 복수의 통제규정으로 통제되는 경우 전문판정 시 판정결과는 “해당”, 통제번호는 복수로 표기될 예정입니다.

* 예시(선박 엔진) : 상황허가 대상품목 : “해당” / 통제번호 : “44.g, 610번”

복수의 통제번호로 통제되는 경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4]에 규정된 사안별 심사대상을 판별하는 기준은 앞선(숫자가 작은) 통제번호가 적용됩니다.

* 예시(선박 엔진) : 통제번호 44.g, 610번 중 44.g번이 적용 → 통제번호 1~57번에 해당되므로 거래계약 체결이 '22년 2월 27일까지 완료된 경우에만 사안별 심사대상

복수의 통제규정으로 통제되는 품목을 뒤(숫자가 큰) 통제번호로만 자가판정하고, 허가당국에 해당 자가판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허가당국은 해당 품목에 대해 전문판정서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Q11. 對러시아/벨라루스 통제품목 中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없는 HS코드라면 무조건 비해당인가요?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없는 HS코드라도 무조건 비해당은 아닙니다. [별표 2의2] 對러시아/벨라루스 통제품목 中 통제번호 244번~1402번에는 HS코드가 병기되어 있으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해당입니다.

다만, 1번~243번은 HS코드가 아닌 품명과 사양 등으로 통제품목 해당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품명과 사양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판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판정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12. ①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과 ② 상황허가 대상품목 HSK 연계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①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은 통제되는 품목이 명시된 리스트입니다. 다만, 이 리스트에 우리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자 HS 코드가 없는 품목들에 대해 관련 있는 HSK를 연계하였습니다. 이것이 ② 상황허가 대상품목 HSK 연계표입니다.

①번 자료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부속서이므로 법적 효력이 있으며, ②번 자료는 우리 기업들의 제도 준수를 위해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

나. 허가 관련

Q1. 수출할 품목이 대량파괴무기나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으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황허가 대상 품목 판정이나 상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대상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고시 [별표 2의2]에 규정되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표 2의2]는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라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고시된 품목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시에는 판정을 통해 [별표 2의2]의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수출하셔야 합니다.

Q2.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로 수출할 때 상황허가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의3] 상황허가 면제대상(고시 제54조 제6항 관련)에 해당되면 상황허가가 면제됩니다.

또한 [별표 24]에 명시된 상황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황허가가 면제됩니다.

상황허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자는 반드시 물품등을 수출하기 전에 Yestrade를 통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지 1의4]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별지 16] 수출거래보고서 불인정).

Q3. 수출할 품목에 대한 판정결과 별표 2의2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상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허가기관은 접수 받은 신청 건을 모두 심사하나요?

상황허가 품목에 “해당”될 경우 원칙적으로 對러/벨 수출이 금지됩니다. 다만, 허가기관은 아래 사안별 심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안별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하지 않고 반려 처리될 예정입니다.

* 사안별 심사 대상

1. 선박 및 항공기 안전
2. 민간 원자력 안전
3. 인도적 지원

* 의약품, 의료기기, 식료품 지원에 한정

4. 우리나라 또는 별표 6의 가 지역에 설립된 기업이 소유하거나 지배(전부 또는 공동 지배)하는 회사가 최종사용자인 경우
5.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대해 아래에 해당하는 날까지 거래계약 체결이 완료된 경우

* 1~57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2년 2월 27일까지 완료된 경우

58~231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3년 4월 27일까지 완료된 경우

232~1,159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4년 2월 23일까지 완료된 경우

1,160~1,402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제35차 고시 시행일 전까지 완료된 경우

Q4. 상황허가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기존 체결 계약의 인정 범위는?

계약 체결시점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발효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별표 24]에 통제번호별로 기존 계약으로 인정되는 시점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서(부록, 인보이스, 주문서 등 관련 서류 포함)에는 수출하려는 물품의 물품명, 가액, 수량 등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양 당사자의 거래의사를 확인(서명·날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물품명, 가액,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포괄적인 물품 공급 계약은 기존에 체결된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비재 등 물품의 특성상 최종사용자가 특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종수하인과의 계약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허가당국에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Q5.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대한 상황허가 신청시, 심사부처는 어디인가요?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처리기간은?

허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제28류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제84류 중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에 대한 상황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기관이며, 최종사용자가 수입국정부,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에 해당하는 군수품의 경우, 방위사업청이 허가기관이 됩니다.

허가 신청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가능합니다.

제출하는 서류로는 ①수출계약서, ②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 ③최종수하인 진술서, ④수출자 서약서, ⑤최종사용자 서약서, ⑥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 ⑦그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의 구비서류 안내문('24.5.10.) 참조

* 구매자·최종수하인·최종사용자에 관한 설명자료: 회사이력, 사업내용,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지분 관계(모회사 포함), 주요 고객사 등

수출물품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 최종사용자가 허가 신청 물량만큼 물품등을 수입하려는 사유, 수출물품의 사용용도 사용방법, 설치장소, 재고관리 등

상황허가는 원칙적으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의 기술심사,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Q6. 제35차 고시 개정 전 상황허가서를 발급 받은 경우, 해당 허가서의 유효기간 내에는 수출이 가능한가요?

제35차 고시 개정전에 허가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상황허가서는 고시 개정후에도 해당 허가서의 유효기간 내에는 효력이 있으며, 해당 허가서의 유효기간내에 허가서에 기재된 물품등의 수량, 금액 등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Q7. 전략물자에도 해당하지 않고,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이 가능한지요?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아닐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수출허가 대상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다만,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수출 물품등을 무기등의 제조·개발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의심되는 될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상황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4조 참고)

또한, 미국산 전략물자의 수출 등 미국의 수출통제 역외적용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도 면밀히 살펴서, 필요시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미 상무부의 Entity List 외에도 재무부의 SDN List, 기타 국무부 제재대상자 등과 거래를 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제재대상자로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품등에 대한 수출통제와 별도로 러시아·벨라루스의 금융기관이 SWIFT에 배제되거나 주요국의 제재대상자로 등재되어 국제대금결제가 안 될 수 있으므로, 거래은행 등에 금융거래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8. 기존에 러시아에 대하여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기존 허가를 활용하여 러시아 수출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러시아 수출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수출자 스스로 미국 등 국제사회 제재 저촉 가능성을 판단하여 거래를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사항 이외에도 De-minimis Rule, FDP Rule 등에 따라 여전히 미 상무부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기존 거래상대방이 새롭게 Entity List 등으로 지정되거나, 거래은행 또는 선박이 신규 금융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9. 러시아에 수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를 경유하는 경우 상황허가 대상 품목 판정이 필요합니까?

우선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실제 최종목적지가 러시아인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우회수출의 가능성은 없는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출물품의 최종목적지가 러시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러시아를 경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판정 또는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러시아로 수출할 경우에는 경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10. 국내에 소재한 기업이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기업으로부터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조달하여 국내통관없이 해외현지에서 對러시아·벨라루스로 바로 수출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국내에 소재한 기업이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조달하여 국내통관없이 해외현지에서 對러시아·벨라루스로 바로 수출할 경우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되므로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정부의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 가령,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이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을 하고 국내기업이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출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기업과 무관하게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외 현지 국가의 수출통제법령을 준수하여 수출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령,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이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을 하면서 수출대금도 해외법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른 수출통제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Q11. 고시 [별표24] 사안별 심사 대상별 증빙자료들의 예시를 요청드립니다.

- ① 다호(인도적 지원 * 의약품, 의료기기, 식료품 지원에 한정)
 - 식약처의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 및 러시아의 ‘의료기기 등록허가증’ 등 의료용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라호 : 우리나라 또는 별표 6의 가 지역에 설립된 기업이 소유하거나 지배(전부 또는 공동 지배)하는 회사가 최종사용자인 경우
 - 관련 기업의 정관, 최종사용자의 법인통합등기부등본 및 우리기업의 공시자료 등 최종사용자에 대한 소유(지분)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
- ③ 마호 :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대해 아래에 해당하는 날까지 거래계약 체결이 완료된 경우
 - Q4의 답변 참고

Q12.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의3] 상황허가 면제대상과 [별표24] 국제사회 수출통제 공조를 위한 러시아, 벨라루스 허가 지침상의 면제 대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별표 2의3] 상황허가 면제대상은 동물, 어류, 곡물 등 군용 전용(轉用) 가능성이 전혀 없어 상황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품목을 명시한 것입니다. HS 2단위 기준 43종이며, 해당 HS 코드에 해당되는 품목은 상황허가가 면제됩니다. (사전신고서 등 서류 제출 불필요)

[별표24]의 상황허가 면제 대상은 별표2의2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품목에는 해당되나 허가를 면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13. 사전신고서 제출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의 사전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는 “접수 중”으로 표기됩니다. 산업부 담당자가 허가면제 사유, 우려거래자 여부 및 품목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전 신고서에 이상이 없어 수리되면 “접수완료”로 표기되며, 수출(통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시 제26조 제3항에 따른 의무가 부과되는 면제 사유의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적의 이행하셔야 합니다.

다. 기타

Q1.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시기는 언제인가요?

고시 개정일은 현재 8월말로 예정되어 있으나, 정확한 날짜는 의견수렴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Q2.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관련 추가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절차, 제재 현안 등 수출입기업의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 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품목) 02-6000-6496, 6497 수출통제 품목 분석, 관련 업계 동향 파악

(제도) 02-6000-6498, 6499 수출통제 현안·법제 분석 안내

또한, 우리나라의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및 국제사회의 對러시아·벨라루스 최신 제재 사항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러시아 제재 홈페이지(russia.kosti.or.kr)를 별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Q3.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이외 러·우크라 사태 관련 지원기관 정보를 알 수 있나요?

분야	지원기관	지원내용
금융제재	금융감독원 (www.fcsc.kr) ·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국번없이) 1332→6번 · 팩스(02-3145-8662)	기업, 현지 주재원, 유학생 등의 對러 금융제재로 인한 금융애로 접수·해소
금융지원 및 대금결제	금융감독원 포용금융실 (02-3145-8409) 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 (02-3705-5425) 국내 거래은행 지점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라인을 개설하여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에 대한 신속한 대금결제 지원
무역지원	KOTRA · 무역투자24 전담창구 1600-7119(2 → 4)	“무역투자24” 온·오프 전담창구 운영 진출기업 동향 점검, 비상연락망 가동
	무역협회 (www.kita.net) · 긴급애로대책반 02-1566-5114	수출입기업 대상 긴급 애로접수 창구 운영